|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의 맨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문날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 **이 름** | 김기중 | **작성일** |  |
| **첨부파일** |  |

 |
|

|  |
| --- |
|  지문날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국회보 1999. 10.호변호사 김기중  8월 13일 일본에서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대문짝만하게 신문을 장식하는데, 우리의 지문날인반대운동은 거의 기사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일본에서는 무려 20여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온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 점만으로도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물론 인권의 측면에서도 일본에 얼마나 뒤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작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면서도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으니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정작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공식적인 행사마다 애국가를 집단으로 제창하면서도, 일본정부가 국기, 국가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 우경화의 조짐이라고 호들갑이니,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외국을 침략했던 전체주의를 가진 경험이 있으니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우리도 무려 2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군사독재정부를 우리의 손으로 구성한 전력이 있으니, 무엇이 그리 크게 다른지 의문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쉽게 색출한다는 명분아래(한국인의 일본 불법체류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최근 일본정부의 우경화경향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니 우경화의 조짐이니 하며 비판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제로 돌아오면 눈을 감아버리니 그 심리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 국민에 대한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에 관하여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인데, 오히려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느니, 대형사고때 신원확인에 필요하다느니, 분단국가인 우리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주장이 서슴없이 제기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라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주국가에서 최고 결정력자인 국민에 대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권력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경찰청이 보관하며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는 것은 곧 모든 국민을 용의자로 본다는 것이며,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헌법과 법률의 전문가인 국회 관계자가 '지문날인이 왜 문제인가' 라고 묻는다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채혈은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혈액과 지문은 다르다?'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사진을 강제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가. 어차피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사진 3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4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중 1장을 경찰청에 맡기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또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드는 것을 어떨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사진 3장외에 머리카락 1개씩을 제출하도록 하면 전 국민에 대한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드는 일은 식은죽 먹기와 같다. 범죄수사나 대형사고때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유전자은행도 지문 못지않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전 국민의 사진을 경찰청이 모아두는 일, 전 국민에 대한 유전자정보은행이 설치하는 일이 헌법의 시각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에 대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경찰청이 보관하며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

 |

 |
|  |

양식의 맨 아래 |

 |

 |